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남해안권 발전 등 》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04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제221720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총괄검토	3
(1) 법 제정의 목적 및 취지	3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4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0
(1) 정의(안 제2조)	10
(2)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4조)	12
(3)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5
(4) 개발지구 지정 등(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19
(5) 발전사업의 시행(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33
(6) 추진 기구(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46
(7) 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안 제28조 및 제29조) ...	52
(8)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안 제30조 및 제31조)	56

(9)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59
(10) 산업 진흥 등(안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63
(11) 특별회계(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68
(12)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안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71
(13) 보칙(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82
(14) 부칙	84

I.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제221720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3. 4.

다. 회 부 일 : 2026. 3.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은 해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사회적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 중요한 공간적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 및 자연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고려할 때 국가 발전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지역임.

그러나 남해안권의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관광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5호),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검토의견

가. 총괄검토

(1) 법 제정의 목적 및 취지

제정안은 남해안권을 환태평양 시대를 여는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은 남해안권 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해안권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 해양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강·섬·갯벌·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을 견인할 기회의 공간임.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 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여 남해안권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7년 12월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

은 사실상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해안권 개발의 추진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해안권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 지원과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남해안에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의 종합개발청을 설치하여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에 이어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의 체계를 살펴보면, 11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2개 특별법안 체계 비교 】

구 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허성무의원안)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통보) 제8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9조(개발지구의 지정 등)

구 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허성무의원안)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1조(개발지구 지정의 해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사업시행자 등) 제14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시행	제15조(기초조사)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21조(공공시설의 귀속) 제22조(준공검사 등)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추진 기구	제23조(남해안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제25조(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제26조(남해안청장의 업무) 제27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28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9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남해안 강·섬관광 활성화지구 지정 및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제30조(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1조(남해안 강·섬관광 활성화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투자촉진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	제32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3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제34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35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제36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37조(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 제38조(해양·수산산업의 진흥) 제39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40조(스포츠산업의 진흥) 제41조(웰니스산업의 진흥) 제42조(미래에너지산업의 진흥) 제43조(물류산업의 진흥)

구 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허성무의원안)
	제44조(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제45조(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제4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47조(준용)
남해안권 발전사업 특별회계	제4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4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50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51조(차입금) 제52조(예비비) 제53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4조(잉여금의 처리)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위한 지원	제55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56조(보조금 교부 등) 제57조(자금지원 등) 제58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59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제6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61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62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64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6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66조(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면제) 제6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보칙	제7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71조(감독) 제72조(청문) 제73조(권한의 위임)
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제76조(과태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개발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추진기구로 남해안발전위원회 및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특별회계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관계 법률 적용에 대한 특례를 받는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 및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별법안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체 제	11장 76개 조항	8장 47개 조항 (가지번호 포함)
적용 범위	남해안권 (부산·전남·경남 관할구역)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 연접 기초자치단체 * 남해안선 연접 기초자치단체: 부산·전남·경남 33개 기초자치단체
계획체계	종합계획 → 개발지구 지정 →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수립 *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종합계획 → 개발구역 지정 →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법인(개인)	
추진기구	남해안발전위원회 남해안종합개발청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규제 완화	개발계획 승인 시 - 16개 항목 승인·결정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 - 44개 항목 인·허가 의제	개발계획 승인 시 - 15개 항목 승인·결정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 - 42개 항목 인·허가 의제

구 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재정 지원	10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외국인 투자 및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자금 등 지원	6개 조세 및 5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관광진흥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
강·섬관광활성화 (해양관광산업발전 관광진흥)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첨단과학기술단지 해양관광산업 · 문화관광산업 진흥
투자촉진 관광진흥	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해양·수산업, 수상 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
특별회계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그 밖의 사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 조치 벌칙 · 과태료 조항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 조치 벌칙 · 과태료 조항

다음으로, 제정안과 「해안내륙발전법」을 비교해 보면, 계획체계, 사업시행자, 규제 완화, 재정지원 등 기본적인 법체계가 유사하나,

주요 차이점은 ① 추진기구로 「해안내륙발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동·서·남해안권 발전공동협의회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을 격상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남해안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는 것, ②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

계를 설치하는 것 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현재 「해안내륙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어 별도 입법보다는 해당 법률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고,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유사 입법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소관부처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정 경과 】

- 2006. 8. 30. 남해안균형발전법안 발의(신중식의원 대표발의)
- 2006. 9. 7. 남해안발전특별법안 발의(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2006. 9. 29. 남해안발전 지원법안 발의(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2006. 12. 14.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안 발의(윤두한의원 대표발의)
- 2006. 12. ~ 2007. 4.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 2007. 4. 19. 건설교통위원회,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 의결
- 2007. 11. 21. 법제사법위원회,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 의결
- 2007. 11. 22. 본회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 의결
- * 2010. 4. 15.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간적 범위에 내륙권을 포함하여 제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의 (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해안권”이란 남해안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2.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지구”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남해안관광진흥지구”란 남해안에 있는 강·섬·갯벌·해안 등 해양자원과 문화·역사유산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9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지구를 말한다. 5.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란 해양·수산,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남해안의 강·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지구를 말한다. 6. “남해안권발전사업”이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정안의 적용범위인 “남해안권”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남해안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안내륙발전법」에서 “남해안권”은 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부산광역시 10개, 전라남도 16개, 경상남도 7개 등 33개¹⁾ 기초

1) 부산광역시(10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전라남도(16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남도(7개):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구성됨.

「해안내륙발전법」이 제정(2007. 12.)될 당시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법안²⁾이 발의되었는데, 3개의 법안 모두 “남해안권”을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였지만,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해안선에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내륙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포함할 경우 너무 범위가 넓다는 의견³⁾을 고려하여 “남해안권”은 해안선에 연접한 33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정해짐.

법안의 적용범위인 “남해안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남해안에 연접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33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라남도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될⁴⁾ 예정인바, 남해안권의 범위에 전라남도를 명시한 조문은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2) 남해안균형발전법안(신중식의원 대표발의, 174819), 남해안발전특별법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174860), 남해안발전 지원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175086)

3) 제265회국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p.17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7. 1.]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2)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4조)

제 정 안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종합계획은 남해안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종합계획에 대해,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종합계획은 남해안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계획⁵⁾은 ①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5)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1의2. 초광역권계획: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울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 ②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 종합계획, ③ 시 또는 군 등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등으로 구분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⁶⁾은 시 또는 군 등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간구조, 인구배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최상위 공간계획임.

또한, 도시·군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고,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상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⁷⁾하여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이하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은 계획인구 예측 및 배분,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보전, 경관 등 각 부문별 계획이 통합·조정된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인 바, 이를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타 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경우 법률 간 상충 우려가 있어, 계획 간의 우선순위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 정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25조에 따른 남해안종합개발청의 장(이하 “남해안청장”이라 한다)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남해안권 도시계획, 강·섬 발전 및 특색화 사업, 숲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 관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태평양 관광휴양 거점구축, 광역관광개발 등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해양 치유단지, 갯벌 자원화 등 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로·항만·공항·버티포트·연륙교·연도교·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남해안권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남해안권 인근 지역과의 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12. 연차별 자원조달 대책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산광역시시장·전라남도지사 및 경상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대한 사항을 남해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의 통보) 남해안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 또는 공항·버티포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남해안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합계획 수립·통보

안 제6조와 제7조는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청장이 남해안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의 종합계획이 중장기 발전계획임을 고려할 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한편, 제정안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등 13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버티포트’⁸⁾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심항공교통이 도입·확산되면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종합계획에 ‘버티포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의 종합계획은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른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과 유사하므로, 기존 계획을 보완·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2)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안 제8조는 남해안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 등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버티포트”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을 말함.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버티포트”(Vertiport)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안 제6조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종합계획에는 도로·항만·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과 남해안권 인근 지역과의 교통 등의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이러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해안청장이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항만 등 광역기반시설은 국가 단위 계획으로 통합적인 건설·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타 입법례⁹⁾를 참고하여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임.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분야 개발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남해안청에서 종합계획과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항만 관련 사항을 포함할 경우 계획 간 상충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만”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개발지구 지정 등(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 정 안
제9조(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남해안권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남해안권발전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3. 남해안권발전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남해안권발전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해안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지구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개발지구 지정요청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지정대상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 개발지구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지구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개발지구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남해안청장은 제9조에 따라 개발지구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발지구 지정의 해제) ①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남해안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남해안권발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지구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남해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남해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남해안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해안청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업시행자 등)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해안청장이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남해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남해안권발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남해안발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남해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지구의 지정목적 및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기간
3. 개발지구를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개발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면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군지역에서 개발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1.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14.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6.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⑤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① 개발지구 지정

안 제9조는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해안발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먼저, 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5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개발지구 지정 전 위원회 심의 】

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립공원위원회 ○ 건축위원회 ○ <u>남해안발전위원회</u> ○ <u>중앙연안관리심의회</u>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립공원위원회 ○ 건축위원회 ○ <u>국토정책위원회</u>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10)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10조11)에 따라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의하는 위원회이며,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¹²⁾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임.

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해안내륙발전법」¹³⁾에도 비슷한 내용¹⁴⁾이 규정되어 있음.

11) 「자연공원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③ (생략)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12)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1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의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서 제정안의 남부권개발위원회 또는 남해안발전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로 볼 수 있음.

그리고, 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
치도록 규정하려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¹⁵⁾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사업 대
상 매립지를 반영하려면, 남해안청장이 ‘개발계획’ 승인 전 미리 해양수
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면 되
므로, 개별 개발지구 지정 단계에서 별도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의결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안 제9조제8항은 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개발지구에 「자
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
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건축법」이 자연공원구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
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
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
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
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¹⁶⁾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② 사업시행자 지정

안 제13조는 남해안청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함.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해안내륙발전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¹⁷⁾하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¹⁸⁾하

16)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별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사업시행자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 있음.

제정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남해안청장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로 설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해안청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③ 개발계획의 승인·결정 등의 의제

안 제14조제4항은 남해안청장이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각 호의 개별 법률에 따른 계획의 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의 변경 등에 대한 의제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해안내륙발전법」 19)에서는 15개 항목에 대하여 의제 규정을 두고 있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1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④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

는데, 제정안은 「해안내륙발전법」의 의제 항목에 「수도법」 제5조²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추가하여 16개 항목에 대하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군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3.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20) 「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도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계획임.

중·대규모 수도사업은 최상위 수도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광역상수도 설치계획과 부합하여야 수도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비상 연계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수도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개발계획 수립 시 용수공급 가능 여부 및 수도시설 계획 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검토가 필요함,

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제 항목에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의제 항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의견을 제출한바, 관련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발계획의 승인·결정 등의 의제에 대한 행정부처 의견 】

의제사항	기관	제출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	국토교통부	○ 타 법률들은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4조에서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제17조 실시계획 의제 시에도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률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해양수산부	○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국가 화물 물류의 수요 예측·분석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남해안개발계획 고시를 통해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변경이 될 경우 국가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기본계획은 해양공간 기본정책의 방향, 계획수립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남해안권 개발계획을 고시하더라도 별도 협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의제대상 삭제가 필요함.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도정비계획 수립·변경은 확정된 개발계획에 대한 용수공급계획 및 수도시설계획을 수립하므로, 개발계획 고시 후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관련 조항 삭제가 필요함.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국민의 안전·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청이 직접 수행해야 할 고유권한이므로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의제대상 삭제가 필요함.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수도정비계획 중요사항 변경은 기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대상 외 협의에 의한 변경 대상 별도 규정이 필요함.

※ 자료: 국토교통부

(5) 발전사업의 시행(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 정 안

제15조(기초조사) ① 남해안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안의 입안, 제9조에 따른 개발지구의 지정, 제14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육상 및 해상구역에 대한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남해안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남해안발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남해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② 남해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협의·승인·허가·인가·신고·해제·심사·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0.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2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4.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27.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0.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7.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발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4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43.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인가·허가
4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별 실시계획 승인과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인가·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남해안청장이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안청장, 관계 시·도지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

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이행명령 및 조성 토지의 처분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제14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남해안권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발전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남해안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제21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② 남해안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국가의 경우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남해안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남해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남해안권발전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남해안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남해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실시계획의 승인

안 제16조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남해안청장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임.

실시계획 승인권자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행 「해안내륙발전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²¹⁾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²²⁾하고 있음.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남해안권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 지원과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전담기구인 남해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2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6. (생략)

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을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인·허가등의 의제

안 제17조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각 호의 개별 법률에 따른 협의·승인·허가·인가·신고·해제·심사·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각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절차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44개의 의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40개 의제 항목은 「해안내륙발전법」²³⁾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 항목과 동일함.

2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 4. 15.>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정지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4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4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 인·허가등의 의제 항목 비교 】

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약 등 <u>40개 항목</u>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인가·허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승인과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인가·허가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제출한바, 관계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기관	제출 의견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인가·허가	국토교통부	○ 남해안권은 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시·도내 도시교통권역*으로 한정하여 건설·운영되는 도시철도에 부합하지 않아, 의제 대상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도시교통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승인과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인가·허가	국토교통부	○ 국가차원의 효율적 철도망 구축을 위해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승인” 의제대상 삭제가 필요함.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해양수산부	○ 남해안청에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승인권한이 중복 위임되면 인허가·개발사업 관리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현재 「항만법」상 민간기업도 항만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의제대상 삭제가 필요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해양수산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와 제27조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별도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개별법에 따르도록 해야 함.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국가,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이외 기관이 수도를 공급하거나 경영할 수 없는바, 관련 조항 수정 필요함.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기관	제출 의견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기후에너지 환경부	○ 전기사업법과 달리 본 법안은 설비용량에 구분없이 의제처리되어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부족하며, 전기사업 허가는 국가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여 단순 의제로 허가하는 것은 곤란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림청	○ 인·허가 의제협의 대상에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허가·토사채취신고도 포함하는 것이 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 국토교통부

(6) 추진 기구(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 정 안
제23조(남해안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남해안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4. 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5.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레저·관광산업의 개발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남해안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남해안청장 3. 관계 시·도지사 4.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남해안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환경·해양·도시·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남해안발전사업 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남해안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

실과 남해안종합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남해안발전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남해안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남해안권발전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이하 “남해안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남해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남해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④ 남해안청을 설치할 위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⑤ 남해안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남해안청장의 업무)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권발전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따른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제22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개발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발지구 및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1. 개발지구에서의 행위허가
12.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3. 개발지구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발지구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15. 개발지구 내 토지 및 하천을 이용한 수익사업
1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남해안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7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남해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남해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정안은 개발사업의 추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남해안발전위원회와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남해안종합개발청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추진기구 비교 】

제 정 안

○ 남해안발전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심의사항>

- ▶ 종합계획
- ▶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 ▶ 개발지구 지정과 해제
- ▶ 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주요정책 개발
- ▶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 ▶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개발
- ▶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 ▶ 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
- ▶ 휴양·레저·관광산업의 개발·육성
- ▶ 발전사업의 규제개선사항

○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 국무총리 소속

○ 남해안종합개발청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 중앙행정기관
- 청장 1명, 차장 1명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²⁴⁾, 해양수산부²⁵⁾ 등 여러 부처에서 사업이 진행되므로, 상호 간 중복투자 방지 및 연계를 위한 국가 주도의 위원회와 종합개발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며,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24)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사업기간(2024년~2033년), 대상지역(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사업내용(해안·내륙·섬 자원을 활용한 여행 명소 조성 등)

25)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사업: 사업경과(2023. 2. 20. 해양수산부, 3개 시·도 업무협약 체결), 대상지역(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행정안전부는 ①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²⁶⁾에 따르면,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므로, 남해안발전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한 국토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②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부조직법」에서 규정²⁷⁾하고 있으며,

③ 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와 관련하여, 남해안권은 현행 「해안내

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 ④ (생략)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륙발전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다른 지역(서해안, 동해안, 접경지역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²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정부조직법」 제2조제
2항제10호에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추가하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제2200749호)」(2024. 6. 20. 발의)
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28)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
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부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
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7) 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안 제28조 및 제29조)

제 정 안
제28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남해안청장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리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3.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③ 시·도지사는 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남해안청장은 제3항에 따라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 및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 ⑤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2.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그 밖에 투자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⑥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가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남해안관광진흥 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제외한다)
- ②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③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안 제28조 및 제29조는 남해안청장이 남해안권의 관광·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해안내륙발전법」에서도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과 이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규정²⁹⁾하고 있으며, 남해안권은 섬·갯벌·해안 등 해양자원

2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과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관광·휴양 거점을 육성하려면 공공주도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한바, 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과 이에 따른 특례의 적용은 필요하다고 보임.

국토교통부는 남해안관광진흥지구는 「해안내륙발전법」상 해양관광진흥지구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 규정 도입 필요성이 낮으며, 개발부담금 감면은 필요 최소한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형평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본 법안 외에도 감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해당 요구를 전부 수용할 경우 개발부담금 제도 형해화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개발행위가 제한되나 일부 개발행위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므로³⁰⁾, 제정안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완화는 구역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고,

에 따라 ① 총 면적 10만㎡, ② 해안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육지·도서 지역, ③ 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① 개발부담금 면제, ② 건폐율(20% → 40%) 및 용적률(80% → 100%) 완화(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특례가 적용됨.

30) 「수산자원관리법」

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생태계·경관 보전 등을 목적으로 공원시설의 높이 및 건폐율을 제한³¹⁾하는 「자연공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높이·건폐율에 대한 최대규정이 필요하므로 「자연공원법」상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산림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³²⁾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및 「자연공원법」을 따르므로 「산지관리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1)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2)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8)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안 제30조 및 제31조)

제 정 안
제30조(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남해안청장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리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해제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1조(남해안 강·섬관광 활성화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5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에서 시행하는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교통계획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안 제30조 및 제31조는 남해안청장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³³⁾를 5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임.

행정안전부 통계³⁴⁾에 따르면,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섬은 465개이고 그 중 남해안권(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섬은 75.7%에 해당하는 352개이며, 남해안권에는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으므로,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례에 대하여, 「해안내륙발전법」상 해양관광진흥지구³⁵⁾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다른 입법례와

-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② ~ ④ (생략)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34) 행정안전부, 유인도서 현황, 2021. 10.

3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생략)

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9)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 정 안
제32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남해안청장은 개발지구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남해안청장이 제1항에 따라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① 남해안청장은 제32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해안권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의료시

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촉진지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관광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정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기반 구축 및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등의 양성 및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남해안청장이 개발지구 안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남해안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투자촉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며,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남해안권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발전사업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이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내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해안내륙발전법」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하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 입주기업의 자금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³⁶⁾하고 있음.

3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개발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촉진지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재정경제부 및 행정안전부의 반대가 있는 국·공유지 사용 특례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특례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남해안 발전사업과 무관한 기업까지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 조례로 대부분료 감면, 수익계약 등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자금지원 등 관련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³⁷⁾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체계와 기금관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관광

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
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
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3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장기 대부, 대부분료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수익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산업 진흥 등(안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제 정 안
제35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2.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른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 2. 「관광진흥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계획 반영에 필요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관광자원의 이용 ②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및 관련 정보의 유익한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남해안문화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남해안권 내 대중교통 운영 현황 및 예약·결제 관련 정보 2. 맞춤형 관광 정보 및 실시간 안내 서비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남해안청장이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남해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남해안문화관광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의 문화 관광상품 개발 및 제2항에 따른 남해안문화관광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남해안문화관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휴양·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해양·수산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스포츠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웰니스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웰니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웰니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미래에너지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미래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미래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물류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물류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물류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동서연결 고속화 철도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도 불구하고 남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7조(준용) 개발지구 밖의 지역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45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남해안권발전사업”은 “관련사업”으로, “개발지구” 또는 “제1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은 각각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실시계획”은 “관련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안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는 남해안청장이 남해안권의 휴양·문화관광·해양수산·수상레저·스포츠·웰니스·미래에너지·물류산업 등

의 진흥과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도심항공교통 도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지원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

남해안권의 기후·자연환경 등을 활용하여 특화된 산업과 중점개발 분야를 명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해안내륙발전법」에서도 첨단과학기술단지(제24조),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제28조),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제29조)에 대한 규정이 있는바, 제정안은 이를 좀 더 구체화·다각화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바,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산업 진흥 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

산업 진흥	기관	제출 의견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국토교통부	○ 동서연결 고속화철도를 포함한 국가철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건설·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남해안문화관광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관광홍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관광 및 축제 정보 제공시스템(“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구축·운영 중이므로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예산 및 관광홍보 비효율성 발생 우려가 있음.

산업 진흥	기관	제출 의견
스포츠산업의 진흥	문화체육 관광부	○ 특정 권역에 대해 국가 지원을 명시할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삭제가 필요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문화체육 관광부	○ 「체육시설법」상 규제 조항은 일률적으로 규율됨이 바람직하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하여 “체육시설 특례” 규정 삭제가 필요함.

※ 자료: 국토교통부

(11) 특별회계(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제 정 안

제48조(특별회계의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4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개발지구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개발지구 내 토지 및 하천을 이용한 수익금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용지의 조성 및 매입 비용
2.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 남해안권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4.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51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7. 그 밖에 남해안권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③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1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3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4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일반회계·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용지 조성,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하는 내용임.

개별 부처가 일반회계로 남해안권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 부처별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므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고, 계속사업이라도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 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남해안권 발전사업은 이미 기존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 중인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 요건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을 특정 지역의 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 및 재정원칙에 반하므로 세입 항목 중 “국유재산” 관련 항목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³⁸⁾에 따라 특별회계는 법률로 설치하되, 동 법 별표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는바, 별표 1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2024. 6. 20. 발의)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38)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2)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안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제 정 안

제55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해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개발지구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56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7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58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외에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개발지구로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지구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 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6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1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지구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남해안청장”으로 본다.

③ 남해안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남해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지구의 보

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3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제64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남해안권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66조(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면제) 국가는 남해안권 개발·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6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행위 기준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8조(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습지보호지역 개발행위 기준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9조(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광역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허용된 구역은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한다.

① 부담금 감면

안 제5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안내륙발전법³⁹⁾」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대다수의 특별법⁴⁰⁾에서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해안권의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부담금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경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관련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

3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4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부담금 감면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

부담금 감면 사항	기관	제출 의견
총괄	기획예산처	○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타 법령에서 개별 부담금의 감면조항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 부담금 각 근거 법령 외 별도 법률에 감면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투명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취지에 미부합 ○ 구체적 부담금 감면 대상·기준은 각 부담금별 소관부처가 부담금 부과목적 및 취지, 타 지역 및 사업과의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근거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발부담금	국토교통부	○ 개발부담금 감면은 필요 최소한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형평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본 법안 외에도 감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해당 요구를 전부 수용할 경우 개발부담금 제도 형해화 우려가 있음.
생태계보전부담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 복원목적 및 국방목적 사업에 한해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타 사업과의 형평성 및 입법취지등을 고려하여 삭제가 필요함
농지보전부담금	농림축산 식품부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담금 감면 조항은 해당 근거법령에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체초지조성비		

부담금 감면 사항	기관	제출 의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은 타 분야와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법률이 아닌 「공유수면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남해안청장이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수면법」에 따라 감면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의 조성을 위해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감면여부는 소관 법률인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자료: 국토교통부

②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 제66조는 남해안권 개발·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41)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4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부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별법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면제요건, 선정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② 남해안권 개발·발전과 관련한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③ 유사사례 등으로의 법제화 파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③ 그 밖의 지원 및 특례조항

제정안은 남해안권의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 자금 지원, 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서 다수 의견을 제출한바, 관련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자금지원·특례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

특례 사항	기관	제출 의견
토지·건물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장기 사용허가·대부 등 특례 부여가 가능하므로 “공유재산 특례” 관련 부분은 삭제가 필요함.
기반시설설치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특정 권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설치 및 설치지원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함.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림청	○ 개발지구의 효율적 개발 도모 및 유사 입법례에 따라 “개발지구의 보전산지 지정 해제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위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조문 신설이 필요함.
개발제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책사업 등에도 예외없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고, 예외 인정 시 제도의 목적달성 곤란 및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 우려되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특례” 규정 삭제가 필요함.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경관의 유지·보전이 필요하여 보호지역으로 관리 중인 지역으로, 국제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확대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금지행위 특례” 삭제 필요함.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에서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써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보전 중이나, 본 법안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면 보호구역 지정 취지 훼손 우려가 있음.

※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로, 안 제59조는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⁴²⁾에도 불구하고 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⁴³⁾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별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2024. 6. 20. 발의)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42)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13) 보칙(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 정 안

제7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남해안청장은 개발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남해안청장은 개발지구 지정의 제안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남해안청장은 개발지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감독) ① 남해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남해안권발전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문) 남해안청장은 제71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남해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안청장 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안 제70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남해안청장이 개발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조항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도 규정⁴⁴⁾되어 있으며, 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4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부칙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먼저, 시행일은 하위 법령 제정, 조직 구성, 제도 준비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제정안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점과 현행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은 제정(2007. 12.)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고, 한 차례 연장(2018. 12.)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제정안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제정안 제12조는 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시 허가를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규정⁴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정안에서 행정처분, 처벌 등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⁴⁶⁾의 ‘환경’ 관련 공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로 보이므로, 제정안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추가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79

4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
 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
 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